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9월 23일, 임미애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3.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19.)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3.) 상정, 축조심사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7.) 상정

제434회 국회(임사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4.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4.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미애의원)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는 지역구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중선거구제를, 광역의회 선거는 지역구당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각 지역구 의석수의 10분의 1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선거제도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불비례성이 크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거나 선거 때마다 의회 내 정당 구성이 극단적으로 바뀌어 안정성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지방의회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보다는 사실상 정당의 임명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실태는 정당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선거의 비례성을 높여 일당 독점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정치의 활력을 되찾아 행정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있어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자치구·시·군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을 폐지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한 의원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등).
- 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선거구획정안을 한 차례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같은 조 제8항).
- 다. 시·도의회 의원은 선거구시·도 의원과 보정시·도 의원으로 구성하 되, 보정시·도 의원은 선거를 하지 아니함(안 제20조제2항).
- 라. 선거구시·도 의원은 해당 시·도의 선거구를 단위로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선거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할 선거구시·도 의원정수는 2명 이상 6명 이하로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별표 2 등).
- 마. 보정시·도 의원 의석은 시·도별 선거구시·도 의원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시·도 의원정수(선거구시·도 의원정수와 보정시·도 의원정수를 합한 수)에 해당 정당의 득표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의석에서 해당 정당의 선거구시

- 도의원 당선인수를 제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함(안 제190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